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2차 정례회 행정·재무위원회
【2022. 11. 17.(목) 10:00】
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(기획재정국)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
행 정·재 무 위 원 회
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

(기획재정국)

2022년 11월 17일

전문위원 장 석 현

Ⅰ. 안 건 명: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

Ⅱ. 제출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[1)]

Ⅲ. 기 금 명: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재정)[2)]

Ⅳ. 기금운용계획안

1. 기금 운용 총칙

○ 설치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설치목적: 각종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

○ 설치년도: 2021년

○ 재원조성: 각종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
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---

1) 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**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**을 받아야 한다.

2) **<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 >**

구 분	조성재원	기금용도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-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- 예탁금 원금·이자수입 등	-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 - 예수금 원금·이자 상환 등

○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2022년도말 조성액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
	수입(A)	지출(B)	증감(A-B)	
49,050,474	513,746	22,295,000	△21,781,254	27,269,220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의 2023년도말 조성 규모는 272억 6,922만원이며,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예수금원리금 상환[3] 계획으로 전년도말 대비 217억 8,125만 4천원 감소함

2. 자금운용계획

○ **수입계획 및 지출계획**

(단위: 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목	수입액	세부사업	지출액
합 계	49,564,220	합 계	49,564,220
이자수입	513,746	예치금	27,269,220
예치금회수	49,050,474	예수금원리금상환	22,295,000

○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의 수입계획은

-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억 1,374만 6천원을 계상하고
- 예치금회수는 '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490억 5,047만 4천원을 계상함

3) **기금 지출계획의 예수금원리금상환**: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

○ 지출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의 지출계획은

-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 272억 6,922만원을 계상하고
-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용도(원금 및 이자 상환)로 222억 9,500만원 계상함

3. 종합의견

○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「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

○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, 세입감소 또는 재원이 필요한 경우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,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임

○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의 기금 전출(222억 9,500만원)을 통해 구 재정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, 이는 본 기금 설치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

붙임1 예산과 기금의 비교

< 예산과 기금의 비교표 >

구 분	일 반 회 계	특 별 회 계	기 금
설치사유	▪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	▪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▪ 특정사업 운영 ▪ 특정자금 보유 운용	▪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
재원조달 및 운용형태	▪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	▪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	▪ 출연금,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수행
확정절차	▪ 사업부서 예산요구, 예산부서 예산안편성, 지방의회 심의·의결	▪ 좌 동	▪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, 예산부서 협의·조정, 지방의회 심의·의결
집행절차	▪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-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등	▪ 좌 동	▪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
수입과 지출의 연 계	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	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	▪ 좌 동
계획변경	▪ 추경예산 편성	▪ 좌 동	▪ 주요항목(분야·부문·정책사업)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
결 산	▪ 지방의회 심의·승인	좌 동	▪ 좌 동

붙임2 관련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·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
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 · 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
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(章) · 관(款) · 항(項)으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 ·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 · 부문 ·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 · 세부사업 · 목으로 구분한다.